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내용 및 질의응답

-문화재수리 관계자 대상 설명자료-

2017. 03

2017년 설명회 일정

전체일정

구분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지역별 설명회			
일자	3월14일(화)	3월16일(목)	3월21일(화)	3월23일(목)	
시간	14:00 ~ 16:00 (2시간)	1부	13:00 ~ 15:00(2시간)		
		2부	15:00 ~ 17:00(2시간)		
대상	문화재청 고시 제2017-22호/23호 대상(총44건) 발주단체 문화재수리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	1부	지자체 문화재수리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		
		2부	수리업체		
지역	서울	대전	대구	서울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천연기념물센터 강당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대회의실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차수	1차	2차	3차	4차	

2017년 설명회 일정

지역별 설명회 세부일정(2차~4차)

구분	대상	시간	소요시간	내용
1부	발주자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	13:00 ~ 13:05	5분	인사말
		13:05 ~ 14:00	55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설명
		14:00 ~ 14:55	55분	질의응답
		14:55 ~ 15:00	5분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2부	문화재수리 업체	15:00 ~ 15:05	5분	인사말
		15:05 ~ 15:35	30분	수리현장 점검결과 공유
		15:35 ~ 16:25	50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설명
		16:25 ~ 16:55	30분	질의응답
		16:55 ~ 17:00	5분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Contents

- PART 1**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 PART 2**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
- PART 3**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해설
- PART 4** ■ 세부심사방법 해설
- PART 5** ■ FAQ

PART 1.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001. 배경 및 필요성

002.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문제점 분석

00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004. 주요 진행 경과

00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1.1 배경 및 필요성

■ 목적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역량 강화

문화재수리 공공조달 계약제도 전반의 문화재 적격성 향상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달 계약제도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문화재수리 품질을 보장하는 비용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행환경 구축

최저가 중심의 역량 평가
및 시설공사 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송례문 복구공사와 관련 부실 수리의 핵심원인으로 최저가 중심의 문화재수리역량 평가 및 수리 대상 문화재의 역사성, 전문성, 학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공사 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운찰제” 형태의
수리역량 평가 환경

실제 수리 역량에 대한 평가 부문의 변별력 저하로 가격 중심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수리능력과는 상관없는 수리업자가 선정되는 “운찰제” 논란 지속

수리 대상 문화재에 적합한
수리능력 평가 기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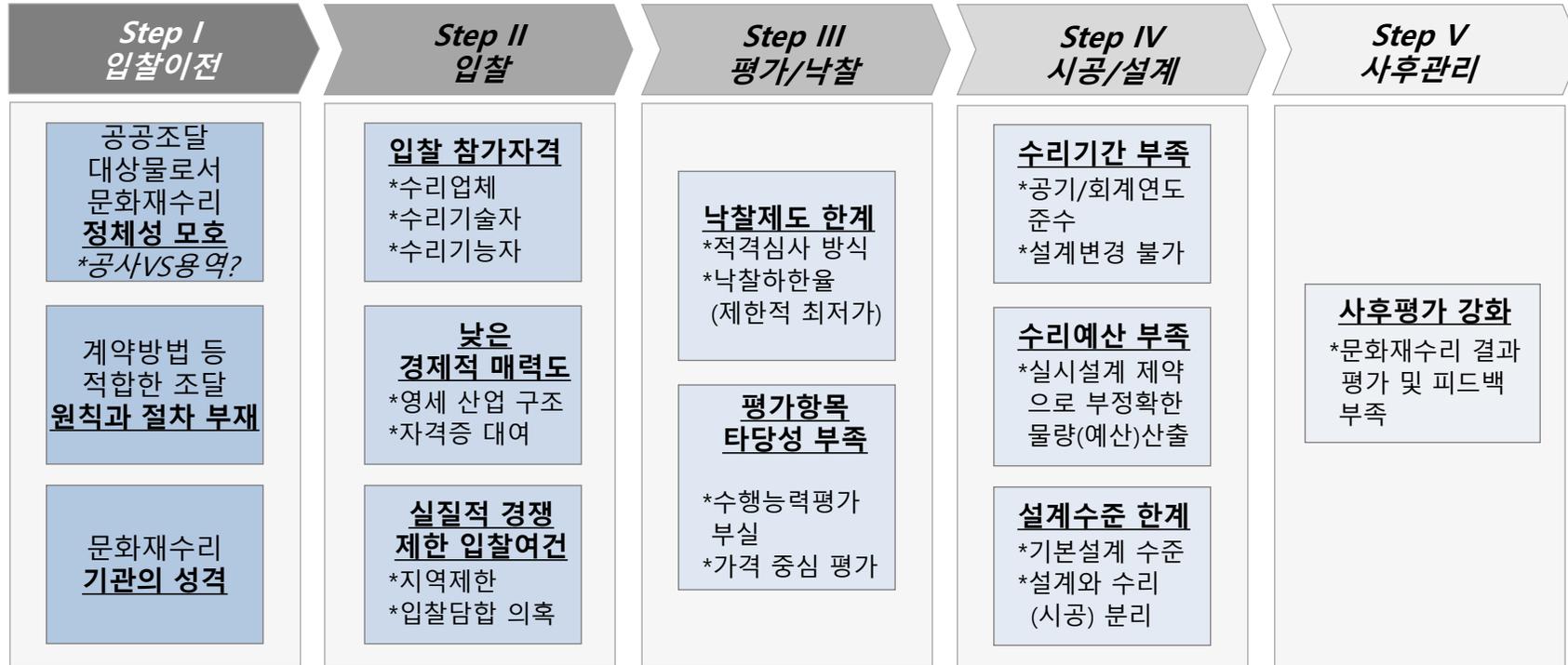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수리기법과 공법의 난이도와 관련 없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안정적 문화재 수리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리품질 저하 발생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부정적 인식 증가로 문화재 관리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1.2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문제점 분석

문제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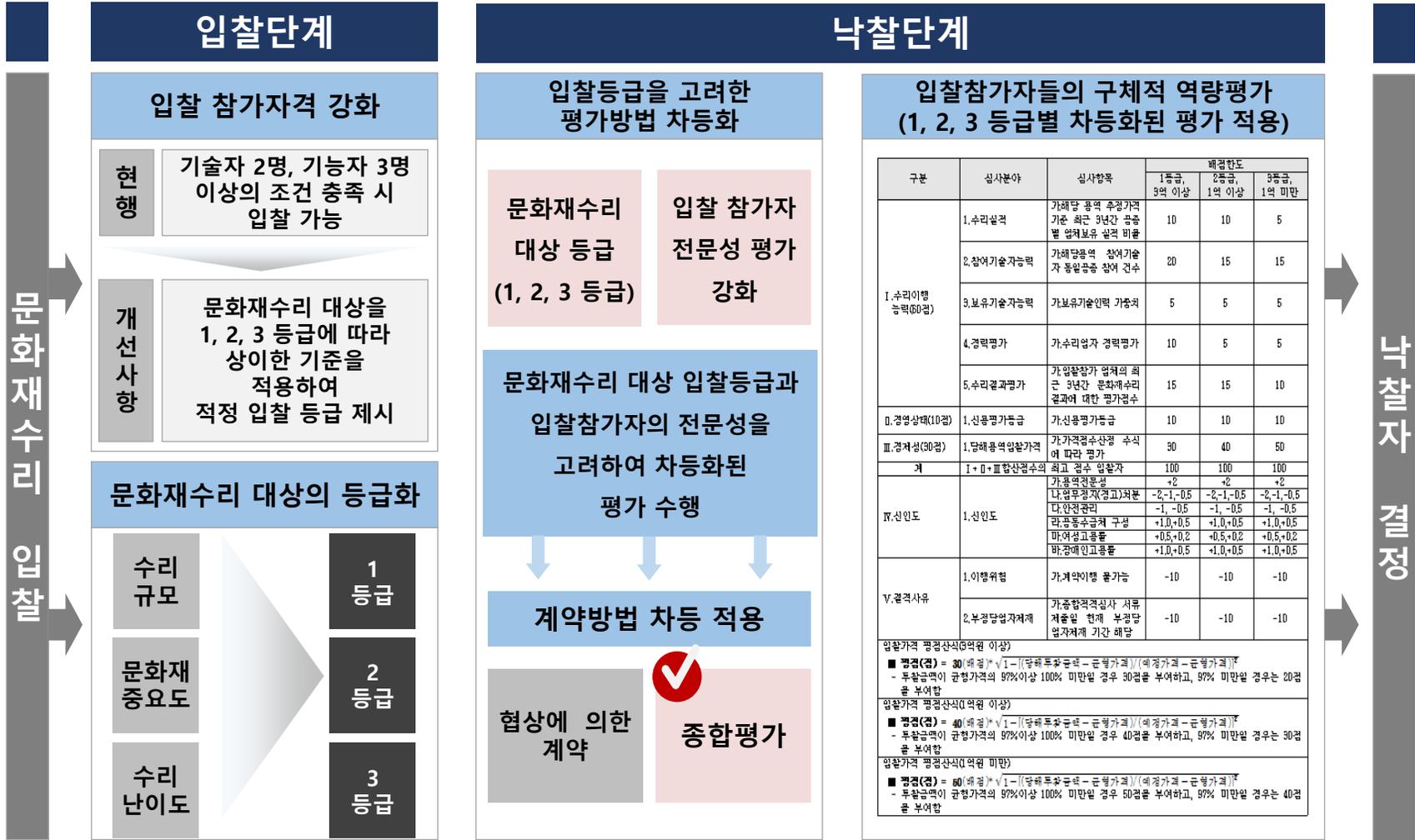
- S1: 현행 체계는 **시설공사 조달 체계와 유사**(최저가낙찰제 또는 가격경쟁을 기반으로 한 적격심사제 적용)
- S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시공능력 평가 등 시설공사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자격증 대여 및 입찰담합 등의 문제 발생
- S3: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 시 입찰가격 70~90%, 수행능력 10~30%로 평가(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하고 있으며, 3억 원 미만의 문화재수리가 80% 이상으로 **입찰가격이 평가를 좌우하게 되어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S4: 설계변경 불가, 실측설계 한계로 산출물량 부정확 및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설계자가 수리과정 전반에 관여 불가**
- S5: 문화재수리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입찰이전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시설공사와 구분하여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공조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1.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도출과정



법·제도적 기반(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기재부 계약예규, 행자부 예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1.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개선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낙찰자 결정 방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 문화재수리에 대해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금액,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 1등급 입찰에만 해당
- 1등급 입찰 중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수리 입찰

입찰등급에 따라 적정 낙찰자 선정

입찰등급

낙찰방법

1등급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or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 한정 적용 (별도의 정량평가 시행)

2등급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3등급

現 적격심사 적용

3등급 문화재수리 입찰 건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1.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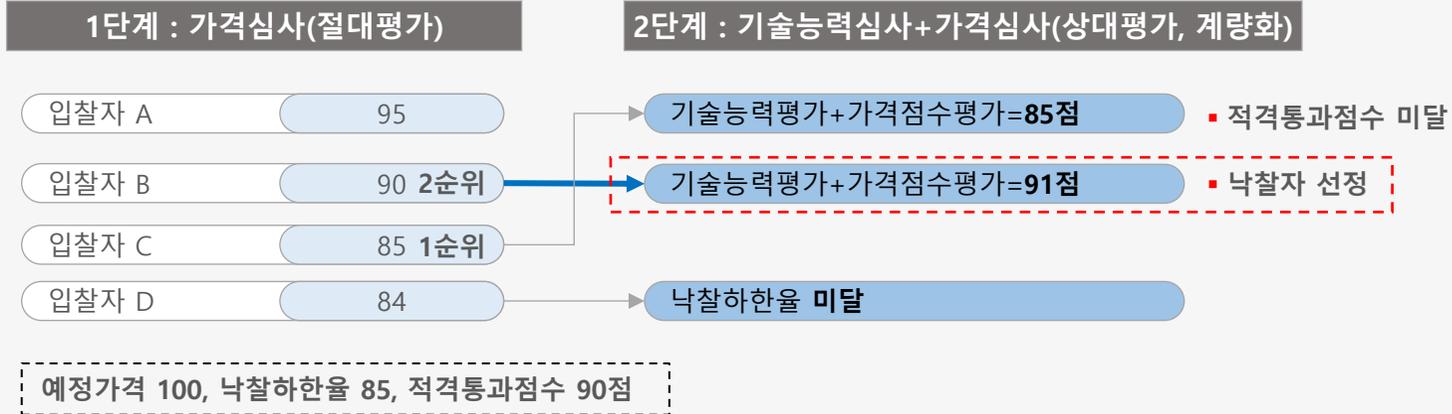
종합평가 대 적격심사 비교분석

구 분	평 가 절 차			
적격심사	①가격평가(1차)	② 종합평점(2차)	② 적격자 선정(3차)	④가격 기반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가 제시한 투찰금액 바탕으로 입찰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가격평가 신인도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평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인 기관을 적격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 1순위를 심사대상자로 선정 적격심사 1순위 대상부터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차이점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체계는 유사하나 이행능력 평가강화, 가격평가 방식 및 통과점수 합산 방식 등이 주요 차이점</p>		<p style="text-align: center;">상대적으로 적격심사는 가격 기반, 종합심사(종합평가)는 수행능력 기반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수리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적격성의 차등적 평가 가능</p>	
종합평가	①종합평점(1차)		② 종합평점 기반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이행능력 가격평가(균형가격: 입찰자 중 일정비율의 고가와 저가 투찰자의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 기준 평가) 신인도 계약신뢰도 경영상태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종합평점 = (수리이행능력) + (경영상태) + (가격점수) + (신인도)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1.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종합평가 및 적격심사 평가방법 비교(예시)

기존 : 적격심사(2단계 평가)



개선 : 종합평가

	기술능력(70)		가격점수(30)	=	종합점수	비고
입찰자 A	67		25	=	92점	▪ 종합평가를 통해 최고점자인 입찰자 A 선정
입찰자 B	64	+	26	=	90점	
입찰자 C	62	+	27	=	89점	
입찰자 D	60	+	30	=	90점	▪ 기존 적격심사 시 입찰자 D 선정

최고가 입찰 (입찰자 B)
최저가 입찰 (입찰자 D)

종합평가 통과점수 : 90점

1.4 주요 진행 경과

문화재수리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및 검증 과정

'14.04

'14.04~'15.07

'15.07~'16.01

'16.01~09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조달청,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결정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구성

- 1차~8차 T/F 진행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초안) 마련 및 확정

- 9차~13차 T/F 진행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초안)시뮬레이션 및 모의입찰

- 14차~16차 T/F 진행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안) 마련 및 확정

'16.09

'16.10~11

'16.12~'17.02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에 따른 설명회 실시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개정안 도출 준비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 (국가계약법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16.09.19)
 -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총 15건 고시
 -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대상 3건(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16.09.27)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12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6-85호, 16.09.27)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실시('16.10)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지역별 설명회 실시
 - * 일자 및 장소: 대전(10.13), 부산(10.17), 대구(10.19), 서울(10.20),광주(10.24)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업무매뉴얼 배포('16.11)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1건 추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 2017-5호, '17.01.11)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입·낙찰 자료 수집('17.02월 기준 총 3건)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총 44건 추가 고시
 -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대상 5건(문화재청 고시 제2017-22호, '17.02.14)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39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7-23호, 17.02.14)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수행 및 1차 개정(안) 도출

1 시뮬레이션 모델설계 - 자료 확보

자료 확보

- 종합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된 모든 업체(351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자료를 수집함
- 시뮬레이션 분석에 소요되는 기초자료(평가점수 근거자료 및 실제 자기평가서)를 수집하기 위해 우편, E-mail, Fax를 통해 협조 공문 발송 및 수신여부 확인
- 자료 수집은 3차에 걸쳐 약 60일간 총 83개 기업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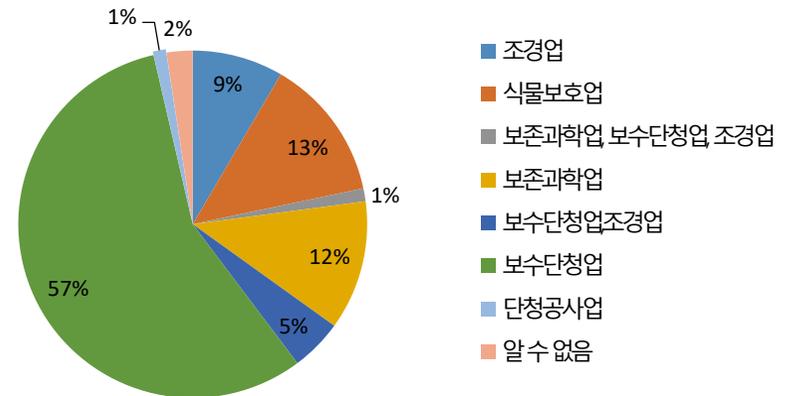
수리업체 자료 협조 요청 및 수집



수집 결과

- 수리업종 : 보수단청업(57%), 식물보호업(13%), 보존과학업(12%), 조경업(9%) 순으로 참여
- 수리업체 소재지 : 경상북도(20%), 경기도(17%), 서울(13%), 충청남도(11%) 순으로 참여

문화재수리업종 별 수집현황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수행 및 1차 개정(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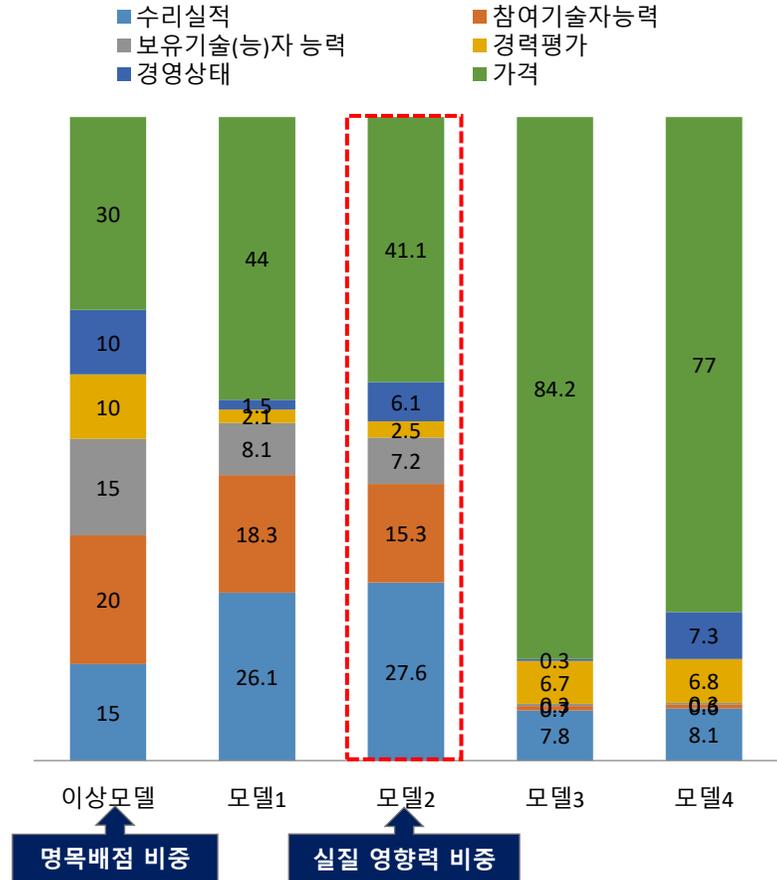
2 시뮬레이션 모델설계 - 심사분야선정

- 종합평가에 적용될 적절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 심사항목을 조합한 총 4가지 파일럿테스트 모델 설계
-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모델 별 심사 항목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자산 및 유동비율 + 균형 가격 모델”이 채택됨**
 - 경영상태 심사항목인 신용평가등급과 자산 및 유동비율평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경제성 분야 투찰가격 평가의 경우 가격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종합평가 심사 항목으로 적절치 않음

심사분야별
설계모델

- 1 신용평가등급 + 균형가격
- 2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 균형가격**
- 3 신용평가등급 + 투찰가격
- 4 자산 및 유동비율 + 투찰가격

심사항목별 종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3 모의입찰 진행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모의입찰 시스템에 종합 및 전문 문화재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등급 및 업종에 따른 7개의 모의입찰 공고
- 모의입찰 기간 : 2015년 12월 31일 ~ 2016년 1월 13일
- 업체로부터 '모의입찰 자기평가서 및 평가점수근거자료' 및 의견 회신
- 자기평가서 회신업체 가운데 개찰 결과 무효처리 되지 않은 유효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 모의입찰 공고

CASE	공고번호-차수	공고명	입찰등급
1	20151229712-00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1등급
2	20151229895-00	시도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2등급
3	20151229896-00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목조건축물 보수	3등급
4	20151229897-00	국가지정문화재 성곽 정비	1등급
5	20151229900-00	시도지정문화재 석탑보존처리	2등급
6	20151229901-00	경복궁내 조경정비	2등급
7	20151229902-00	천연기념물 생육 환경개선	3등급

모의공고 별 참여업체 현황

CASE	업종제한	입찰참여 업체 수	자기평가서 제출 업체 수	유효입찰 업체수
1	종합수리업	47	37	20
2	종합수리업	47	37	30
3	종합수리업	47	37	29
4	종합/석공사업	36	29	20
5	보존과학업	13	12	8
6	조경업	11	9	4
7	식물보호업	4	3	2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4 모의입찰 결과

- 제 8조 (균형가격 등의 산정)에 따라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7미만인 경우 무효입찰서로 제외
- 각 모의광고 별 유효입찰서 개수를 기준으로 균형가격 산정
 - 20개 이상인 CASE 1,2,3,4의 경우, 상위 40%와 하위 20%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10개 미만인 CASE 5,6,7의 경우, 상위 50와 하위 10%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CASE	광고명	기초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	균형가격	균형가격 투찰율	입찰등급
1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400,654,000	403,368,475	100.678%	365,929,514	90.718%	1등급
2	시도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188,530,000	189,853,500	100.702%	167,983,792	88.481%	2등급
3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목조건축물 보수	77,650,000	78,145,675	100.638%	69,348,278	88.742%	3등급
4	국가지정문화재 성곽 정비	514,610,500	515,936,950	100.258%	462,656,125	89.673%	1등급
5	시도지정문화재 석탑보존처리	248,512,000	248,678,525	100.067%	217,414,800	87.428%	2등급
6	경복궁 내 조경정비	201,712,000	204,468,950	101.367%	189,709,680	92.782%	2등급
7	천연기념물 생육 환경 개선	60,012,450	60,880,575	101.447%	53,725,700	88.248%	3등급
균형가격 평균 투찰율						89.439%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 낙찰가능 기준점수의 적정성과 신인도 점수 영향력의 적정성 검증

5 낙찰기준점수 통과율 비교분석 : 기본 종합점수 vs. 종합점수(신인도 포함)

- 1차 개정(안)에 따른 모의입찰 결과 : 신인도 점수의 영향력이 낙찰가능 최저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신인도 항목 가점을 조정
- 모의입찰에 최종 개정(안) 적용 결과 : 신인도 점수는 줄었으나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 기준 완화로 종합점수 평균이 상승하여 낙찰기준 점수 통과업체가 전체적으로 증가

CASE	시뮬레이션 결과('15. 12. 18)		모의입찰 결과				비고 입찰등급 (최저점수)
	1차 개정(안)		1차 개정(안)		최종 개정(안)		
	기본종합점수	종합점수	기본종합점수	종합점수	기본종합점수	종합 점수	
1	44.6%	66.3%	35%	70%	57.1%	71.4%	1등급(93점)
2	77.1%	83.1%	56%	80%	70%	80%	2등급(90점)
3	91.6%	92.8%	62%	86%	75.9%	86.2%	3등급(86점)
4			50%	60%	55%	60%	1등급(93점)
5			75%	75%	75%	75%	2등급(90점)

* 기본 종합점수 : 수리이행능력 + 경영상태 + 가격점수

* 종합점수 : 수리이행능력 + 경영상태 + 가격점수 + 신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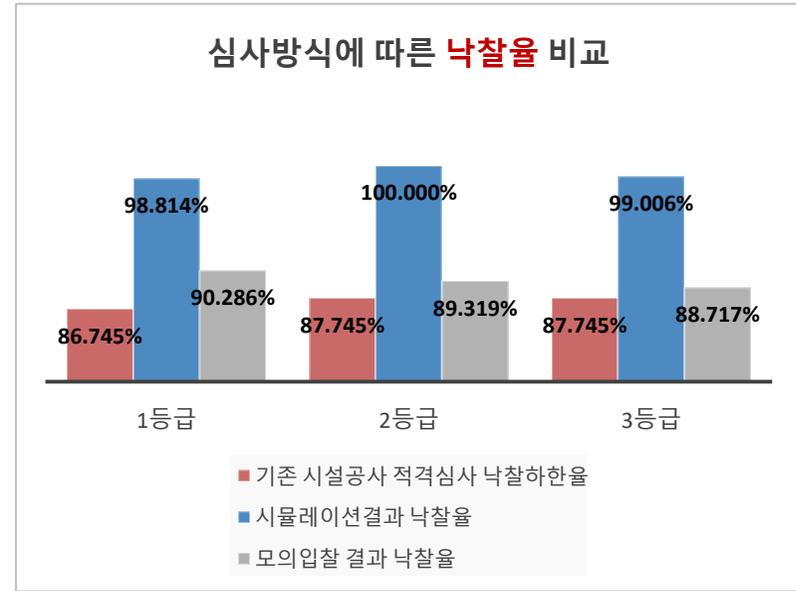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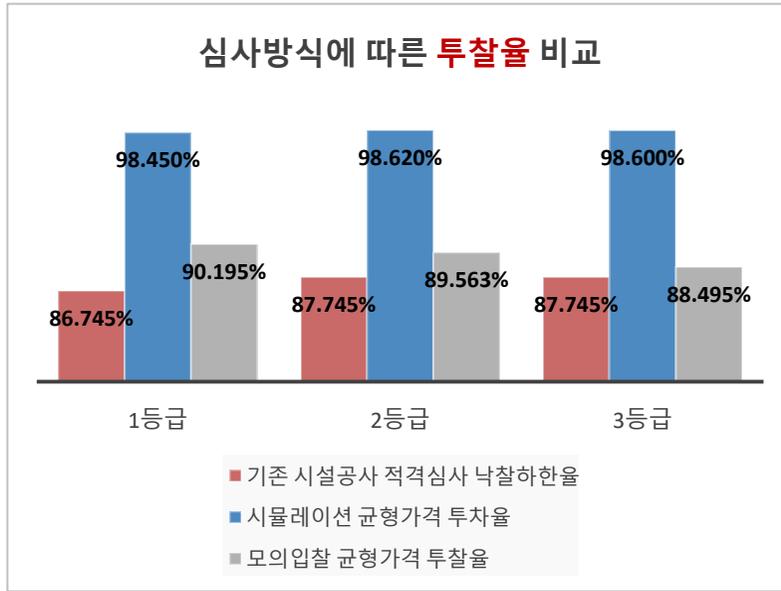
1.5 심사세부기준 주요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및 모의입찰 최종결과

6 시뮬레이션 및 모의입찰 최종 결과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에 균형가격 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 모의입찰 낙찰율은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방식에 비해 1~3% 증가한 **88%~90%**대에 형성됨
- 시뮬레이션과 모의입찰 결과 낙찰율은 균형가격 투찰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기존 제한적인 최저가(낙찰하한율)에 상관없이 낙찰자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모의입찰 공고별 낙찰자



PART 2.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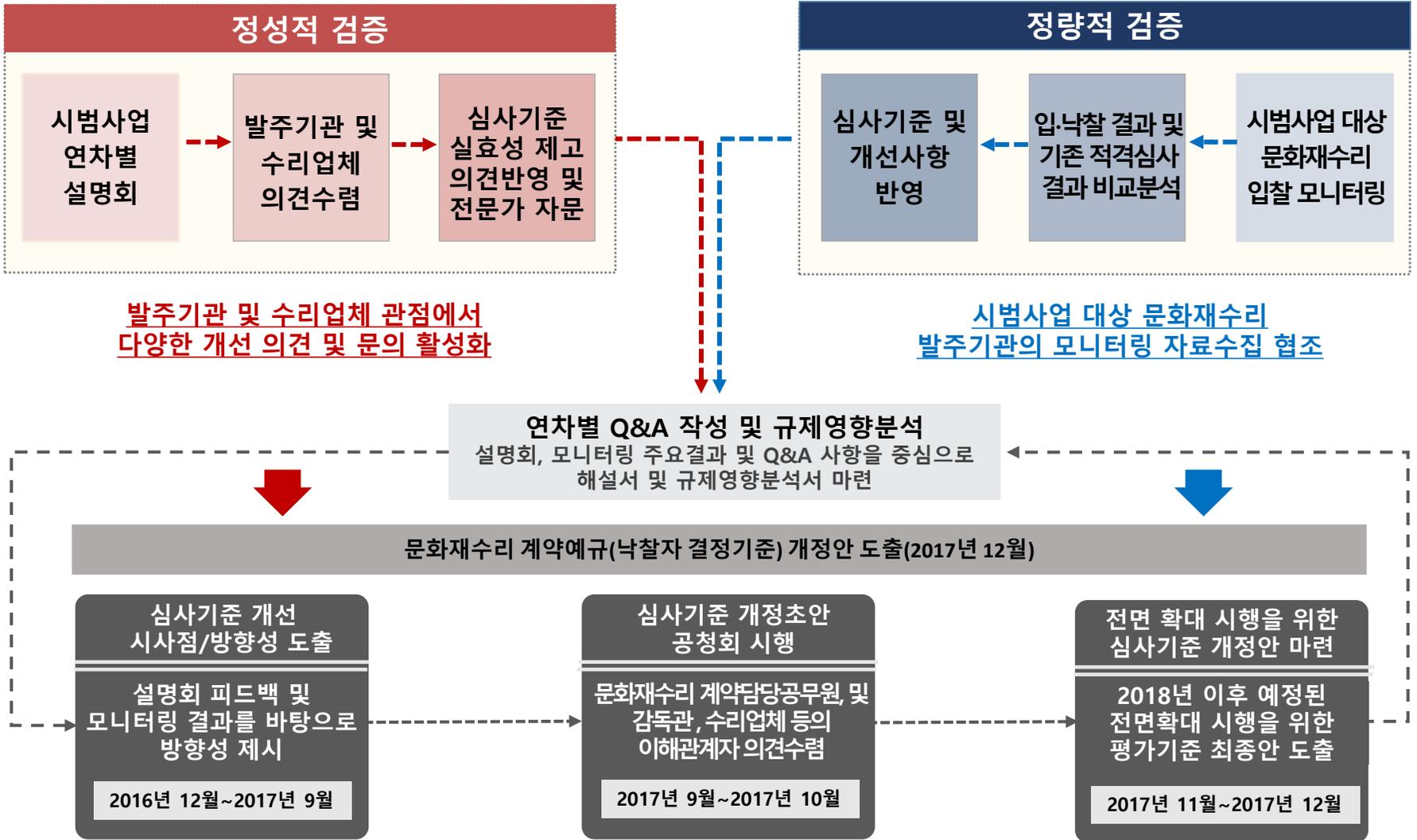
001. 시범사업 개요

002.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방법

00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2.1 시범사업 개요

2018년 전면 시행에 앞서 총 60여 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16년 15개 , '17년 45개 고시)



발주기관 및 수리업체 관점에서 다양한 개선 의견 및 문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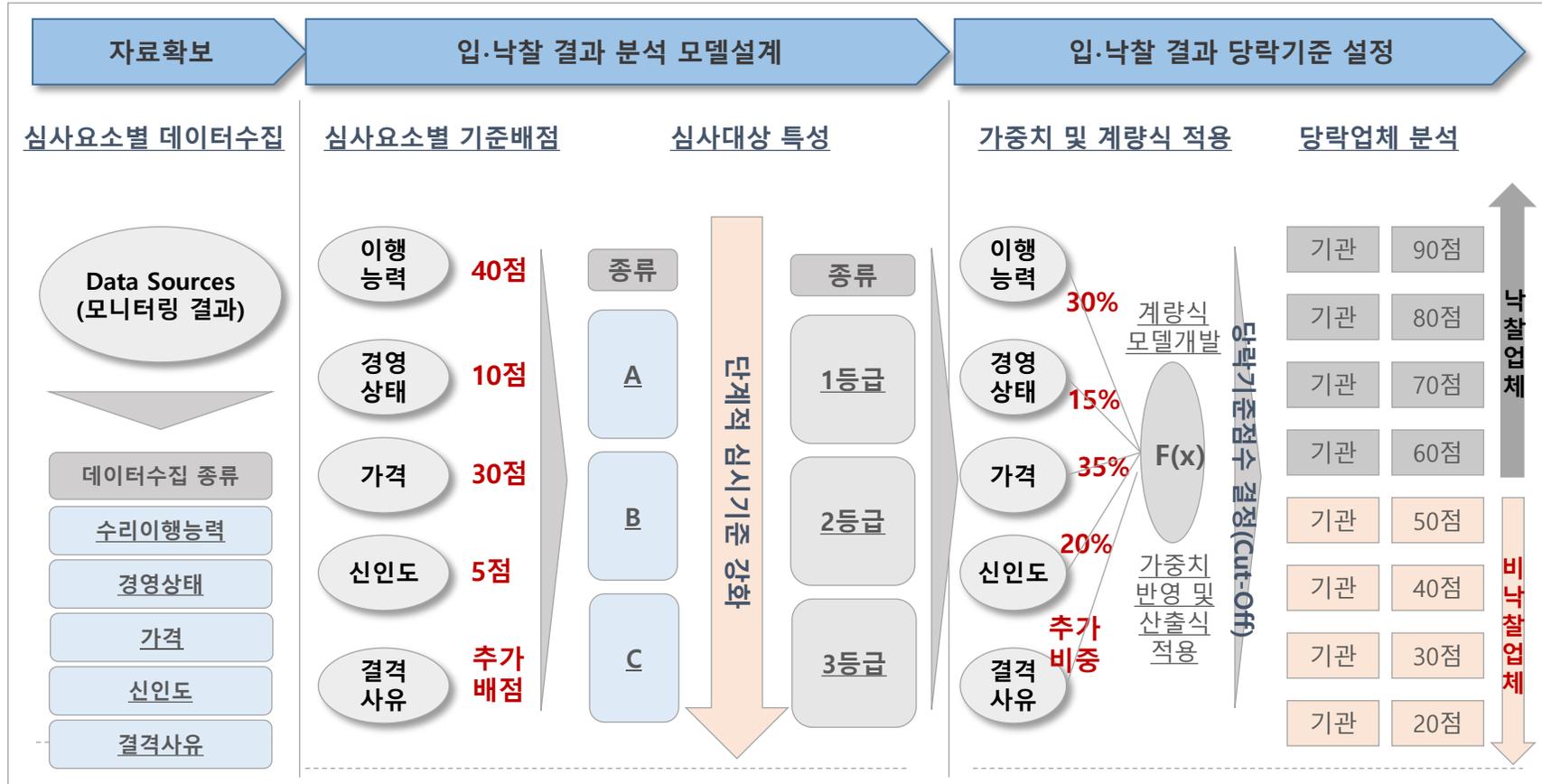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발주기관의 모니터링 자료수집 협조

2.2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입·낙찰 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문화재수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안) 도출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입·낙찰결과 분석
모델설계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문화재수리(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16.09.19)

- 2016년 3건, 2017년 6건 총 9건 고시 완료
- 총 9건 중 낙찰자 선정 완료 1건, 입찰공고 1건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	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16.09.27
2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낙찰완료	
3	서울	종로구	사적 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3월 공고 예정	
4	경기	여주시	사적 195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영릉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 : '17.02.08 ▪ 개찰일 : '17.03.20) 	문화재청 고시 제 2017-5호, '17.01.11
5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북동측 외곽담장 등 시설물 보수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2호, '17.02.14
6	서울	중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1차)		
7	경기	구리시	사적 193	구리 동구릉	구리 동구릉(승릉) 연지 정비		
8	경기	화성시	사적 206	화성 용릉과 건릉	용건릉 진입부 정비		
9	충남	아산시	사적 155	아산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 2016년 12건, 2017년 39건 총 51건 고시 완료
- 총 51건 중 낙찰자 선정 완료 2건, 지침변경으로 인한 제외 1건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	서울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낙찰완료	문화재청 고시 제 2016-85호, '16.09.27
2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서문·성곽 해체 및 보수	제외 (계속사업으로 인한 지침변경)	
3	경기	포천시	사적 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	
4	전남	나주시	사적 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	
5	서울	종로구	사적 143	서울 문묘와 성균관	항문복원계단설치, 담장및협문등보수	낙찰완료	
6	강원	원주시	사적 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	
7	충남	부여군	사적 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3월 공고 예정	
8	충남	아산시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고택 보수	-	
9	전북	남원시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적목당 복원	-	
10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5월 공고 예정	
11	울산	중구	사적 32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	
12	제주	서귀포시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3월 공고 예정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13	서울	송파구	사적297	서울 몽촌토성	탐방로 정비	추후 입찰공고 예정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3호, '17.02.14
14	서울	종로구	보물142	서울 동관왕묘	화계정비, 배수로 정비		
15	서울		사적10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문루, 창의문 협문 보수		
16	서울		사적10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17	부산	금정구	사적215	금정산성	탐방로 정비		
18	인천	강화군	사적225	강화 초지진	성곽보수		
19	인천	강화군	사적452	강화 외성	육축 복원		
20	경기	광주시	사적57	남한산성	송렬전 해체보수		
21	경기	파주시	사적323	파주 윤관장군묘	재실 및 외삼문 보수		
22	강원	동해시	보물1292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적광전 해체보수		
23	강원	영월군	사적446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24	충북	증평군	사적527	증평 추성산성	탐방로 정비		
25	충북	청주시	사적212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성곽발굴지 정비		
26	충남	공주시	사적12	공주 공산성	관람환경조성 및 주변정비		
27	충남	공주시	사적387	공주 우금치 전적	위령탑 보수 및 주변정비		
28	충남	보령시	사적501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및 성벽정비		
29	충남	서산시	사적116	서산 해미읍성	성곽보수		
30	충남	홍성군	사적231	홍성 홍주읍성	수구유적 정비, 북문 복원		
31	전북	고창군	사적145	고창읍성	동문육축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32	전남	나주시	사적337	나주읍성	서성벽 정비, 서수구문원 복원		

2.3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진행현황	비고
33	경북	경주시	보물442	경주 양동 관가정	관가정 해체보수	추후 입찰공고 예정	문화재청 고시 제 2017-23호, '17.02.14
34	경북	경주시	사적47	경주 명활성	북문지 성곽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35	경북	경주시	사적16	경주 월성	해자 복원		
36	경북	경주시	사적18	경주 동궁과 월지	침전권역 복원(서편 건물지 복원)		
37	경북	경주시	사적512	경주 대릉원 일원	금관총 복원		
38	경북	경주시	사적6	경주 황룡사지	담장정비		
39	경북	고령군	사적79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분 정비 및 주변정비		
40	경북	문경시	사적147	문경 조령 관문	성벽 보수		
41	경북	성주군	보물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만화루 복원, 수복사 이건		
42	경북	청송군	보물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선방건립		
43	경남	창녕군	사적5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분 복원		
44	경남	창원시	보물1729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범종루 건립		
45	경남	하동군	사적453	하동읍성	용지 보수 및 성곽정비		
46	경남	함안군	사적515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분 복원정비		
47	경남	함양군	보물1691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존 보수		
48	경남		사적113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제승당 등 13동 단청		
49	제주	서귀포시	천기443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관람데크시설 정비		
50	제주	제주시	사적380	제주목 관아	목관아 단청 및 바닥정비		
51	제주	제주시	사적134	제주 삼성혈	담장보수		

PART 3.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해설

001. 주요 검토사항

002. 입찰공고문 예시

3.1 주요 검토사항

적용기준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 참고



적용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 참고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

3.1 주요 검토사항

원가계산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조 참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름

입찰등급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참고

입찰등급의 결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계약담당자가 입찰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음(1-2등급 내에서만 조정 가능, 3등급으로 하향 불가)
- ▶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음

3.1 주요 검토사항

입찰공고 명시사항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참고

◆◆◆ 입찰공고문 주요 명시사항

- 0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02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 0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 0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 0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 0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 07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함)
 - 08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인 경우 주된 공종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일 때 70%로 차감하여 실적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입찰공고문에 사전명시)**

3.1 주요 검토사항

입찰서 등의 제출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01 입찰서
- 0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신청서(「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1호 서식 참조)
- 0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2호 서식 참조)
- 0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 05 문화재수리계획서(대상 문화재수리에 한정)(「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11호 서식 참조)
- 06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07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3.1 주요 검토사항

입찰서 등의 제출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참고

◆◆◆ 실적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01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새로 작성하여 발주처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02 실적증명서 발급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평가 분류한 "수리코드"가 명기되어야 함
- 03 한 건의 문화재수리에 복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수리코드가 명기되어야 하며 주된 공종은 공사금액 비중으로 결정함
- 04 실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이전에 발급실적이 있는 동일 문화재 수리 건에 대해 서로 다른 수리코드가 부여되지 않도록 확인
- 05 동일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최초 평가분류하여 실적 증명서가 발급된 실적에 대하여 다음 입찰 등에서 다른 "수리코드"가 기재되어 접수될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1 주요 검토사항

■ 균형가격 산정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9조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참고

◆◆◆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는 100분의 85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입찰서 개수	입찰금액 제외범위
1개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함
2개	입찰금액 2개 산술평균
3개 이상 10개 미만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최하위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10개 이상 20개 이하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20개 초과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3.1 주요 검토사항

■ 균형가격 산정 예시

◆◆◆ 유효한 입찰서가 12개 들어왔을 경우

구분	입찰금액 (천원)	비고
A	58,000	하위 1개 제외(하위 10%)
B	58,200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해당
C	58,250	
D	58,320	
E	58,340	
F	59,000	
G	59,100	
H	59,110	
I	59,500	상위 4개 제외(상위 40%)
J	59,990	
K	60,000	
L	60,100	

■ 유효한 입찰이란?

-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84% 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 유효한 입찰서 12개 중

- 입찰금액 순 상위 40%인 4개
($12 \times 0.4 = 4.8 \rightarrow$ 소수점 절사)
- 입찰금액 순 하위 10%인 1개
($12 \times 0.1 = 1.2 \rightarrow$ 소수점 절사)

제외한 7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
균형가격

■ 균형가격 = (B~H 입찰금액의 합)/(B~H 입찰서 개수)

$$= 410,320,000 / 7 = 58,617,142\text{원}$$

(소수점 이하 절사)

3.1 주요 검토사항

심사항목 및 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조 참고

◆◆◆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등급

-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종합평가 하여 낙찰자 결정
-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1], [별표3-2] 참조

2등급

-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종합평가 하여 낙찰자 결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4] 참조

3등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음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 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1 주요 검토사항

심사항목 및 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 참고

◆◆◆ 세부심사 방법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 참조)
- ▶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 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6] 참조)
- ▶ 경제성 :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7] 참조)
- ▶ 결격사유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7] 참조
- ▶ 문화재수리계획 :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9] 참조)

3.1 주요 검토사항

■ 종합점수 산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5조 참고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

■ 낙찰자 결정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 참고

1 종합점수가 등급별 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를 선정

<등급별 통과점수>



2 종합점수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심사>

- 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점수가 높은 자(대상 문화재수리 한정)
- ② 수리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③ 입찰금액이 낮은 자
- ④ 추첨

<종합평가>

추첨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평가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2503호

공사 입찰 공고

건명	북한산성 대성문 해체·보수공사(장기계속)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문화재수리 종합평가대상)		
추정금액	금1,400,370,000원	종합평가서류(서면) 제출기한	2017.01.18. 09:00~ 2017.01.19. 18:00
기초금액	금1,400,370,000원	입찰서 제출기한	2017.01.24. 09:00~ 2017.01.26. 12:00
추정가격	금1,273,063,637원	개찰일시	2017.01.26. 13:00
부가가치세	금127,306,363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공사 개요

- ① 공사내역 : 붙임 공사설명서 및 지방서 참조
- ② 공사기간
 - 총차: 착공일로부터 18개월, 1차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③ 1차 금액(예정) : 1,00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① 본 공고는 총액입찰로서 종합평가서류 제출과 입찰서 제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②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대상(서울지역 49%이상)
- ③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화재수리 입찰등급: 입찰등급 1등급
 - 2)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여부: 비해당
 - 3) 문화재수리 코드: 122
 - 4) 수리실적 심사시 5년간 보수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5)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 기준: 서울특별시

3. 입찰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 ③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⑤ 본 입찰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별지의 '종합심사 자료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와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을 권고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선택시)

- ①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
- ②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협정서 제출은 종합평가(수리이행능력평가)시와 나라장터(G2B)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G2B) 제출마감은 2017.01.25.(수) 18:00입니다.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평가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

- 2) 경영상태 평가서류(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1)번 서류와 구분 편철
- 3)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4) 공동수급협정서(선택시)

⑤ 심사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961,259원)	국민연금보험료 (14,590,3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05,3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2,462원)
-------------------------	--------------------------	----------------------------	-------------------------

②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한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의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천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평가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

- ② 계약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별지 제5호 서식" 와 달리 인력을 운용할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문화재 수리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 ③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서비스센터 (☎02-590-8811)
- 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⑥ 입찰참가자격, 수리이행능력 등에 관한 문의 : 도기본 건축부(남궁환 ☎3708-2629)
- ⑦ 기타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재무과(정호욱 ☎2133-3244)
- ⑧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9.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1. 공사 개요

- 1.1. 관리번호 : 1700264-00
- 1.2. 수요기관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1.3. 공 사 명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 1.4. 공사현장 : 경기도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73일
- 1.6. 공사내용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 영릉(英陵) 능제 복원·정비, 영릉(寧陵) 능제 복원, 신성림 조성, 소하천 정비 등
- 1.7. 추정금액 : 15,985,692,000원(추정가격 : 14,431,430,000원 + 부가가치세 : 1,443,143,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111,119,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42,927,00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12,361,984,000원 (77.33%)	12,250,865,000원(77.17%)
전문문화재수리업 (조경업)	3,623,708,000원 (22.67%)	3,623,708,000원(22.83%)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문화재청 고시) 대상공사입니다.
 - 2.1.1. 종합심사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심사기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1.2. 이 공사의 종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입니다.
 - 2.1.3. 기초금액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별도 발표합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3. 일반경쟁(전국) 대상공사입니다.
-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6. 국제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2.6.1. CPC NO. 51259
-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8.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 3.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3.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을 등록한 자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4.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의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 4.1.1. 대표자는 3.1.1.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2017. 3. 20. 18:00
-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5.1. 설계서 열람 장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박준형(☎031-885-3123)
-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추정가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와 2004년 10월 1일 이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구(舊)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6.2.4. 납부기한 : 2017. 3. 20. 18:00

-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1.2.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 7.2.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조] 다만,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1.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 2017.3.17. 00:00 ~ 2017.3.21.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7.3.1. 직접입찰은 7.3.2의 일시에 7.3.3의 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2. 입찰서 제출 일시 : 2017.3.21. 11:00

7.3.3.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시설총괄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7.4. 우편입찰서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7.4.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7.4.2.의 우편입찰서 송달 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7.4.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7.5.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7.5.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7.5.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5.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5.4.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7.5.5.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8.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8.1.1. 제출방법 : 입찰참가자자는 8.1.3. 제출서류를 8.1.2. 제출기한까지 8.1.4의 우편송달처에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도착 되어야 합니다.

8.1.2. 제출기한 : 2017. 3. 20. 18:00

8.1.3. 제출서류

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②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③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④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⑤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8.1.4. 우편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8.1.5.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4】, 【붙임5】의 '종합심사 자료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와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제출을 권고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입찰집행관이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추천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9.2. 개찰일시 : 2016. 3. 21. 11:00

9.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13. 조달청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법령정보-계약예규, 공고 및 관련자료]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계약예규, 공고 및 관련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총괄과(070-4056-73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공고문 예시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붙임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종합심사기준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이라함) [별표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1.1 수리실적 심사

1.1.1 '수리실적' 심사 시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은 '종합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1.1.2 수리실적심사는 심사기준 [별표5] 1. 수리실적 심사의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에 의하며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796,000,000원(11,137,150,000원의 70%)입니다.

2.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2.1.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2.1.1.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시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21이며,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796,000,000원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2.1.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2.1.2.1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입찰자는 문화재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1 신인도 심사

3.1.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3.1.1.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796,000,000원입니다.

3.1.1.2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21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3.1.2 안전관리 심사

3.1.2.1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 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2015년, 2014년, 2013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합니다.

3.1.2.2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0.482)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심사

2.1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59.62%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44.73%입니다.

3.2 입찰공고문 예시

■ 종합심사 대상 입찰공고문 예시(조달청 공고)

3. 기타 유의사항

3.1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문화재 수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이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문화재 수리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문서(공문)로 종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와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마감일시 까지 종합심사신청서 등 제출서류 미제출 시에는 종합심사 수리이행능력심사에서 '0점'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3.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4.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5.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PART 4. 세부심사방법 해설

- 001. 입찰등급 및 심사항목 결정기준
- 00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 003. 입찰등급 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00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00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 006.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 007.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 008.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 009. 제출서류 목록

4.1 입찰등급 및 심사항목 결정기준

입찰등급 평가 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입찰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며
입찰등급 별 상이한 이행능력심사 배점기준이 적용

4.1 입찰등급 및 심사항목 결정기준

입찰등급 산정 예시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문화재수리 명 : 고창 신재호 고택 안채 보수(중요민속문화재 제 39호)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추정가격 : 8천만 원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4.1 입찰등급 및 심사항목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공종 구분

-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 잡공사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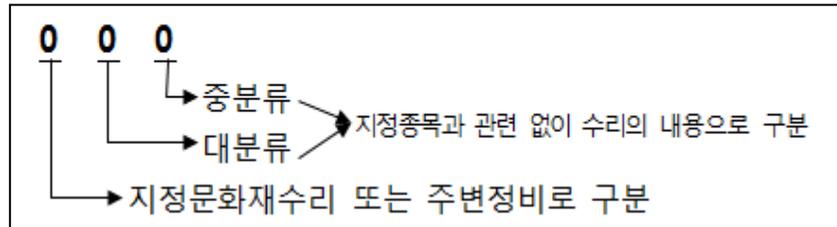
구분	내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 (16개)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 (18개)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 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 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4.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문화재수리 분류

1) 동일 문화재수리

가.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2) 수리코드 부여 단계

STEP 1. 해당 문화재수리가 지정문화재인지 주변정비인지 구분

*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가 복합된 경우 : 수리금액 기준 주된 수리로 구분

STEP 2. 대분류와 중분류 결정

: 지정종목(국보, 보물, 사적 등)과 관계없이 수리 내용으로 구분

STEP 3. 수리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 주구조가 복합되어 있다면 수리금액 기준 주된 수리로 구분

4.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로, 주변정비에 해당

예) 서울 화계사 명부전 보수정비 → 문화재수리이며 주변정비에 해당

∵ 명부전은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로 이를 정비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주변정비)

4.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가.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나.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4.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4.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문화재수리계획 (20점)	문화재수리계획능력	문화재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4.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등급 2등급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수리실적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 핵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핵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 100
 * 수리실적 평가기준 조정 :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 70%까지 하향 가능(단, 최저금액 50억)

공동수급체 구성 : 각 구성원별 실적 합산(시공비율 미반영)

실적인정 범위(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한 모든 문화재수리(수리코드와 무관)
-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 기준(정산 후 실 준공금액)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수리실적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 추정가격 300,158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점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코드 무관	공공	95,756	398,641	304% (398,641/130,920)	20
B 수리		공공	45,872			
C 수리		민간	83,288			
D 수리		공공	112,942			
E 수리		공공	60,783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 추정가격 130,920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점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코드 무관	공공	165,165	616,400	205% (616,400/300,158)	9.65
B 수리		공공	125,287			
C 수리		민간	73,216			
D 수리		공공	172,549			
E 수리		공공	80,183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

$$\square \text{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문화재수리현장배치기간}}{\text{해당문화재수리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보정계수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수리구분	등급계수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기간 산정 시 공사중지 기간 포함]

- 문화재수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현장배치기간 : 배치일부터 타 기술자 변경 배치일 전일까지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는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 적용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1) 해당 문화재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 2)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 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
 - 4)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
 - ▶ **증빙서류**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실적증명서 1개 당 1개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배치기술자 1인당 1부)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배치기술자의 교체

- ▶ 낙찰 후 배치 기술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위반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 ▶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기준일-배치 기술자 변경 요청일)
 1. 배치 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 받아 「문화재수리법」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 수리코드 112 / 추정가격 128,000천원
배치 기술자 '홍길동'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명	수리 코드	등급 계수	수리기간 (일)	보정 계수	현장배치 기간(일)	준공금액 (천원)	환산건수	
							개별	합계
A수리	112	1.2	650	2.0	530	325,000	$2.0 \times 1.2 \times \frac{530}{650}$	5.34
B수리	212	1.0	472	2.0	375	170,000	$2.0 \times 1.0 \times \frac{375}{472}$	
C수리	112	1.2	360	1.0	290	165,000	$1.0 \times 1.2 \times \frac{290}{360}$	
D수리	112	1.2	200	1.0	138	150,000	$1.0 \times 1.2 \times \frac{138}{200}$	
E수리	112	1.2	90	1.0	70	95,000	추정가격 미달	
F수리	222	1.0	150	1.0	150	274,000	수리코드 불일치	

-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한 경우 : 심사점수 7.5점
-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 심사점수 7.5점의 80%만 인정되므로 $7.5 \times 0.8 = 6.0$ 점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해당 자격 취득 연수	경력계수
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인원수 가중치	등급계수
1명	8.0
2명 이상	10.0



단, 상위 경력 보유기술자(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가능

예) 해당 자격 취득 연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case 1. $2.0 \times 10.0 + 1.5 \times 0.0 + 1.0 \times 8.0 = 28$ 점

case 2. $1.0 \times 8.0 + 1.5 \times 8.0 + 1.0 \times 8.0 = 36$ 점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
(입사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일이 기준일)

◆◆◆ 6개월 미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로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된 경우** 두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

* 동등 이상의 경력 : 동일 경력계수를 가진 자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증빙서류**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1인당 1부)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 입찰공고일 2016년 11월 10일 / 보유기술자 능력 심사

연번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명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해당 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경력 (년)	퇴사일	신고일
1	보수	000	홍 일 동	2000.03.08	'12.01.01	○	16	-	
2	보수	000	홍 이 동	2001.11.09	'15.01.01	○	15	-	
3	보수	000	홍 삼 동	2008.03.08	'16.01.01	×	8	'16.09.01	'16.09.09
4	단청	000	홍 사 동	2001.03.08	'16.09.09	×	15	-	
5	조경	000	홍 오 동	2014.03.08	'15.01.01	○	2	-	
6	단청	000	홍 육 동	2016.09.09	'11.01.01	×	-	-	-
7	보수	000	홍 칠 동	2013.03.08	'16.09.09	×	-	-	-

- ▶ 홍삼동(경력 8년) 퇴사 후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사동(경력 15년) 입사
 - 9월 1일 퇴사 후 30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사동으로 변경신고
 - 홍사동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홍삼동의 경력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인정 가능(단, 합산 시 홍삼동의 경력인 8년으로 인정)
- ▶ 15년 이상 2명(경력계수 2.0, 등급계수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경력계수 1.5, 등급계수 8.0), 7년 미만 1명(경력계수 1.0, 등급계수 8.0)
- ▶ 따라서, 평가기준 점수 = $2.0 \times 10.0 + 1.5 \times 8.0 + 1.0 \times 8.0 = 42$ 점 이므로, 보유 기술자 점수는 5.0점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수리업경력 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단, 해당 입찰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문화재수리업)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1.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심사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실적(건수)

▶ 소재지 기준

- 광역자치단체 기준(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에 편입하여 판단)
-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 모두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 인정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심사 :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영업정지 처분 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증빙서류 : 영업정지 처분 공문 사본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영업정지 이력을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확인 필수)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심사 : 산업재해율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 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산업재해율 심사 평가기준

$$\square \text{ 평가기준}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0.2]

*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 최근 3년이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을 말함

*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공단 발행)



건설업 재해율은 동일업종 재해율이 아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조회 >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을 말함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신인도 심사 : 산업재해율 심사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KOSHA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KOSHA logo and menu items: '확인서발급', '신청현황조회', '문서원본확인', '자주하는 질문', and '문고답하기'.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large banner with the title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Industrial Accident Confirmation Certificate Issuance System). The banner text reads: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his is a system for issuing industrial accident confirmation certificates online, so you can experience our citizen service easily and conveniently.) Below the banner are three service icons: 1. '확인서발급' (Confirmation Certificate Issuance) with a blue laptop icon, text: '본인확인을 위해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After logging in with a universal public certificate for business owners for self-verification, issuance is possible.) 2. '신청현황조회' (Check Application Status) with a teal document icon, text: '본인확인을 위해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After logging in with a universal public certificate for business owners for self-verification, checking is possible.) 3. '문서원본확인' (Check Original Document) with a green magnifying glass icon, text: '신개울확인서의 직속상단의 원본문서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By entering the original document number of the Shin-gaewul confirmation certificate, you can check it.)

STEP 1.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certi.kosha.or.kr)

STEP 2.

확인서발급

STEP 3.

로그인(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용 공
인인증서 필요)

STEP 4.

발급신청

TIP. 인터넷 발급이 안 될 경우 사업장 주
소에 해당하는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
게 연락 후 팩스를 통해 발급(동 홈페이지
지에서 일선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심사 : 공동수급체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공동수급체 구성 점수 인정기준(공동계약방식 입찰참여에 한함)**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증빙서류 : 별도 서류 없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평가)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신인도 심사 : 공동수급체 심사(예시)

◆◆◆ 시공비율을 적용하는 심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심사점수 산출 방법

공동수급체 A+B+C					
A사		B사		C사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심사점수	시공비율
10.0	45%	9.5	25%	9.0	30%
심사점수					
$10.0 \times 0.45 + 9.5 \times 0.25 + 9.0 \times 0.30 = 9.575\text{점}$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수리업경력 심사, 영업정지 처분 심사, 안전관리 심사, 보수교육 이행 심사에 적용
- 심사점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제11조제2항)

4.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신인도 심사 : 보수교육 이행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교육 이행	최근 5년간 보유 기술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보수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자 수}} \times 100$

➤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증빙서류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교육수료증(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보수교육 : 「문화재수리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

* 교육수료증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4.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경영상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경영상태 평가기준 산정방식

$$\square \text{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기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공동수급체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제출서류 : 최근 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해당 문화재수리 입찰공고문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 제시

4.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경영상태 심사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확인 방법

- STEP 1.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STEP 2. 조사·연구자료
- STEP 3. 주제별자료
- STEP 4. 기업·산업
- STEP 5.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확인 가능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화폐 외환·국제금융 조사·연구자료 보도·참여담당 현안소개 자연분류 / 국외사주

조사·연구자료

주제별자료

- 물가
- 금융안정
- 외환·국제금융
- 경제일반
- 기업·산업
- 세계경제

기업·산업

번호	제목	일부	날짜	조회
255	2015년 기업경영분석결과(핵심 및 통계편)		2016.10.30	533
254	[BOK 경제연구 제2016-7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		2016.05.17	991
253	[BOK 경제연구 제2016-6호] From Firm-level Imports to Aggregate...		2016.04.27	941
252	2014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도		2016.01.13	1688
251	2013년 산업연관도 "핵심편"		2016.01.13	1636
250	[제2권 제4호] 유형별 유가증권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5.12.31	1373
249	2014년 기업경영분석결과(핵심 및 통계편)		2015.12.02	7489
248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2015.05.18	2250
247	제조업 지원해방의 효율성과 중요소양산업		2015.02.25	2374
246	산업연관분석(핵심)(2014년판)		2015.01.06	4267

F42 Special trade construction 327

5. 성장성에 관한 지표 Indicators concerning Growth					
단위 : %	Unit : %				
Code No.	내역	2013	2014	2015	
501	총 자산 증가율	5.70	5.28	8.55	
502	유형 자산 증가율	5.87	7.34	9.28	
503	유동 자산 증가율	5.45	4.63	8.61	
504	재고 자산 증가율	-1.28	0.85	5.81	
505	자기 자본 증가율	6.05	6.11	8.41	
506	대출액 증가율	7.53	4.02	8.62	

7.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단위 : %	Unit : %				
Code No.	내역	2013	2014	2015	
701	자기 자본 비율	58.94	58.69	59.62	
702	유동 비율	232.45	237.31	244.73	
703	평균 비율	203.99	207.97	216.55	
704	현금 비율	45.13	45.95	52.52	
705	비유동 자산 비율	53.18	53.62	52.16	
706	비유동 장기 자산 비율	44.49	44.25	43.28	
707	부채 비율	89.65	70.40	67.72	
708	유동 부채 비율	50.10	48.21	47.22	
709	비유동 부채 비율	19.55	21.19	20.50	
710	차입금 의존도	17.55	19.51	18.60	
711	차입금 대 매출액	11.49	12.49	12.04	
712	대출채권 대 채입채무	273.96	283.81	284.65	
713	순자산 대 총자산	38.12	39.85	40.75	

6. 손익의 관계비율 Relationship Ratios of Income and Expenses					
단위 : %	Unit : %				
Code No.	내역	2013	2014	2015	
601	총 자산 회전 수익률	4.96	5.04	6.34	
602	총 자산 순이익률	4.01	4.15	5.38	
603	기업 순이익률	5.85	5.97	7.19	
604	기업 순이익률	5.00	5.08	6.22	
605	자기 자본 회전 수익률	8.26	8.62	10.62	
606	자기 자본 순이익률	6.81	7.10	9.01	
607	자산 회전 수익률	18.20	20.26	26.69	
608	자산 순이익률	15.00	16.69	22.63	
609	대출액 회전 수익률	3.15	3.34	4.10	
610	대출액 순이익률	2.50	2.75	3.48	
611	대출액 영업 이익률	3.19	3.41	3.96	
612	대출액 대 매출액	85.58	95.08	94.24	
613	변동비 대 매출액	49.14	52.37	52.13	
614	고정비 대 매출액	49.10	45.80	45.14	
615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0.19	0.22	0.20	
616	민간비 대 매출액	28.90	29.41	29.99	

8. 자산·자본의 회전율 Turnover Ratios of Assets, Liabilities and Stockholders Equity					
단위 : 회	Unit : times				
Code No.	내역	2013	2014	2015	
801	총 자산 회전율	1.54	1.51	1.55	
802	자기 자본 회전율	2.62	2.58	2.59	
803	자본 회전율	5.77	6.05	6.51	
804	기업 자산 회전율	1.75	1.71	1.74	
806	비유동 자산 회전율	4.94	4.82	4.97	
806	유형 자산 회전율	10.40	10.22	10.17	
807	재고 자산 회전율	17.38	17.37	18.10	
808	상(채) 회전율	166.45	220.27	307.84	
809	대출채권 회전율	6.52	6.39	6.72	
810	채입채무 회전율	17.64	17.78	19.56	

4.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경영상태 심사(예시)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산출 방법

계 37기 결산 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현재)		(단위: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 유 동 자 산	117,614,788,093	I . 유 동 부 채	48,709,126,6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183,146,61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1,100,143,948
2. 단기금융상품	7,676,772,648	2. 단기차입금	6,327,000,000
3.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28,182,440,806	3. 유동충당부채	3,663,728,063
4. 재고자산	68,780,719,168	4. 기타유동부채	7,018,179,221
5. 기타유동금융자산	618,921,469	6. 기타유동금융부채	1,710,074,366
6. 기타유동자산	7,373,788,697	II . 비 유 동 부 채	26,736,318,797
II . 비 유 동 자 산	34,676,407,836	1. 장기차입금	20,000,000,000
1. 장기금융상품	3,371,906,119	2. 비유동충당부채	2,112,376,766
2. 매도가능금융자산	22,473,800,702	3. 기타비유동부채	3,623,942,031
3. 투자부동산	0	부 채 총 계	74,445,444,386
4. 유형자산	3,678,483,998	자 본	
5. 무형자산	1,721,838,696	I . 자 본 금	60,447,432,600
6. 기타비유동채권	1,283,964,697	II . 기 타 불 입 자 본	6,743,136,062
7. 기타비유동자산	2,246,413,726	III . 기 타 자 본 구성 요소	309,433,020
자 산 총 계	162,291,196,928	V . 이 외 잉 여 금	21,346,749,981
		자 본 총 계	77,845,761,6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62,291,196,9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서한 COSDAQ

대표이사 조종수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덕

▶ 입찰참가업체(아래 재무상태표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

- 77,845,751,543원(자기자본) /
152,291,196,928원(자산총계)
= **51.116%**

▶ 입찰참가업체(아래 재무상태표 기준)의 유동비율

- 117,614,788,093원(유동자산) /
48,709,125,588원(유동부채)
= **241.464%**

▶ 입찰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 평가기준

- 51.116%(입찰업체 자기자본비율) /
58.69%(전문직별공사업 자기 자본비율)
= **87.10%**

▶ 입찰참가업체의 유동비율 평가기준

- 241.46%(입찰참가업체 유동비율) /
237.31%(전문직별공사업 유동비율)
= **101.75%**

4.6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확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 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경제성 평가기준 산정방식

$$\square \text{ 평가기준(비율)} = \frac{\text{해당투찰금액}}{\text{심사기준제9조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4.7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이행위험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4.8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4)	-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 (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문화재수리계획 평가기준

- 투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가 심사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 시 불이익

- 낙찰 후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 이행여부 수시 점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불이행 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 점검대상 항목 :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4.8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심사위원회

-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심사위원 자격 :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전문위원)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9 제출서류 목록

심사 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수리 실적	4	가.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 각 1부	신청자	
		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기술자 각각 제출)	고용보험공단	

4.9 제출서류 목록

심사 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고용보험공단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9	가.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10	영업정지 공문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안전 관리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안전보건공단	
보수교육 이행실태	12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 상태	13	최근 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 수리계획	14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5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PART 5. FAQ

001.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FAQ

5.1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FAQ

◆◆◆ FAQ

구분	질문내용	질문답변
수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대해 실적 인정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 기준이므로 인정 안됨
배치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공일이 최근 5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기간을 문화재수리기간으로 계산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일 경우 전체기간 인정
공동 수급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수급체 시공비율을 평가기준에 곱하는지, 심사점수에 곱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실적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한지?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분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적격심사 실적증명서와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함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됨
수리 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코드 기입은 어떻게 하는지? 수리코드 첫 번째 자리가 다른데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로 인정이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와 수리업체가 의견을 나누어 정확한 수리코드를 찾아 기입 함. 한번 결정된 수리코드는 변경이 불가하며, 만약 향후 수리코드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양쪽 모두에게 있음 두 번째, 세 번째 코드가 같다면 인정
종합점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점수 산출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종합점수 산출 시, 모든 입찰자의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전자적 처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계산을 해야 하나 향후 시스템 보완 예정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기준으로 자기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첨부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기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1차 확인 후 최종적으로 증빙서류 원본을 받아 검증 후 낙찰자 결정)

5.1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FAQ

◆◆◆ FAQ

구분	질문내용	질문답변
입찰등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등급 조정에 대한 기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대상 문화재수리는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적용 대상으로 고시된 사업이므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 불가
자기평가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업체가 자기평가서 작성능력이 역부족인 경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발주 기간인 만큼 업체가 자기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을 평가함에 있어 계약담당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자치부 및 문화재청에서 민원을 받을 것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연속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업체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상관없이 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동일 회사의 6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로 「문화재수리법」 제 14 조 제 2 항 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된 경우에는 두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감리와 실측설계 입찰 시에도 적용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수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등급 1~2등급 문화재수리공사에만 적용됨

감사합니다.

Q & A
